

#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안내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 요청대상

### ■ 대상자

- 계좌별 최초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 요청방법

- 대면 신청 : 영업점에 신청서류 제출
- 비대면 신청 : 홈페이지([www.eugenefn.com](http://www.eugenefn.com))의 신청서류 양식(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yjs0520@eugenefn.com](mailto:yjs0520@eugenefn.com))로 제출

### ■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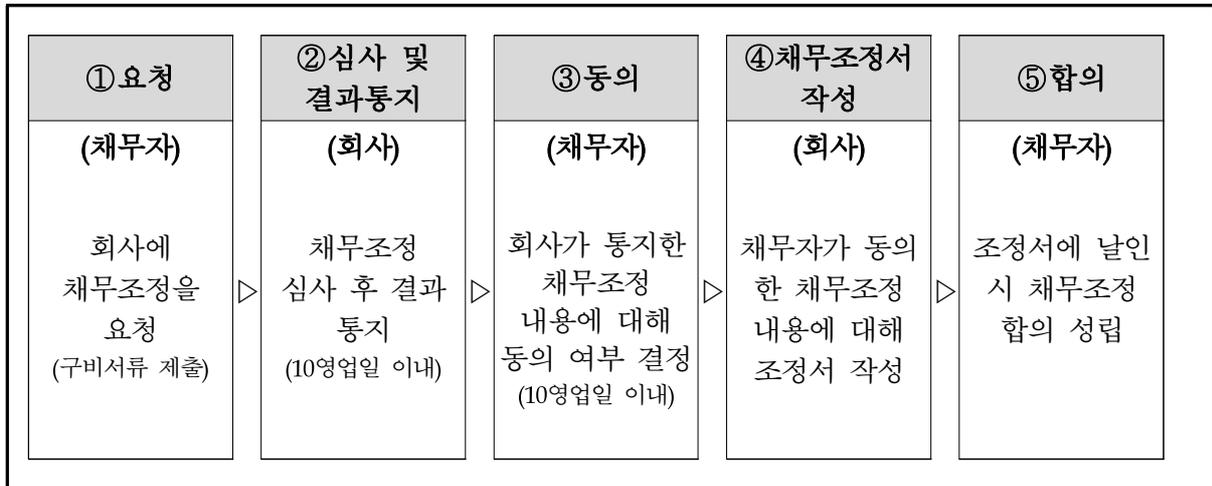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 채무조정 내용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장 1년</li><li>▶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장 1년</li><li>▶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약정이자율 조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원금 감면</li><li>▶ 연체이자, 이자 감면</li></ul>

※ 상기 내용 외 회사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채무조정 절차



□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회사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채무조정 요청서

신청인 기본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채무조정 요청대상

회사명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채무조정 요청사유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

◇ 본 회사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채무조정요청서 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 3.채무조정안 4.변제능력 입증자료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객센터(☎1588-6300)나 거래 영업점으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_\_\_\_\_ (인/서명)

## 채무조정안(채무자용)

신청인 기본정보

(단위 : 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업	월평균 소득(A)	월평균 생계비(B)	금융비용(C) (타 대출 상환액)	가용소득 (D)

※ 월평균 소득(A)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평균 생계비(B)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회사명	계좌번호	대출일자	잔액(원)

채무조정 요청사항

(단위 : 원)

구분	조정 내용
상환 유예	( Y / N )
상환기간 연장	( Y / N )
이자율 인하	( Y / N )
원금 감면	( Y / N )
이자 감면	( Y / N )
기타 사항	( Y / N )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 \_\_\_\_\_ (인)

#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채무조정 신청용]

[귀 사]의 채무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귀 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한 채무 조회·승낙·이행·관리·개선
보유 및 이용기간	채무의 변제완료일로부터 5년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변제완료일이란 고객과 당사간 동의한 채무조정의 원리금 변제가 완료된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무조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주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 구분, 거주지 국가, 연계정보 CI, 국내거소신고번호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해소시기, 채무불이행 관련인 발생사실, 채무불이행 여부
- 신용능력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정보평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
	위 <u>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신청에 대한 채무 조회·승낙·이행 관리·개선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신용정보원, NICE평가정보 : 동 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법령상의 보존 기간을 따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 에 관한 제공 동의”는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채무조정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해소시기, 채무불이행 관련인 발생사실, 채무불이행 여부
	위 <u>개인신용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주))
조회 목적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신청에 대한 채무 조회·승낙·이행 관리·개선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사의 조회 결과 귀화와의 채무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변제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에 관한 조회 동의”는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채무조정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업, 국내거소신고번호
- 신용거래정보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가계)당좌예금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해소시기, 채무불이행 관련인 발생사실, 채무불이행 여부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위 <u>개인신용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